

조선 전기 여성 주체의 경험과 감정에 대한 사례 연구*

– 『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한 고전 여성 지식 체계의 생성
기반에 대한 시론으로서 –

김남이**

| 목차 |

1. 서론: 문제의 제기
2. 고전 여성 지식 資源으로서 『실록』
3. 『실록』에서 추려낸 여성 경험과 언어의 사례들
4. 맺는말 : 고전 여성 지식에서의 개별성, 그리고 중첩성

| 초록 |

이 글은 고전 여성에 관한 지식 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조선 전기의 『실록』을 자료로 당대 여성의 경험과 언어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여성에 관한 지식 체계의 생성 가능성과 체계를 생각해 본 결과물이다. 이 과정을 통해 향후 고전 지식 체계에 여성주의 관점이 기여할 수 있는 상상력과 실천의 지점 또한 확인해 보았다. 현재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한국 고전 지식의 체계는 한마디로 '중세'라는 시스템의 復記 또는 그에 대한 복고적 상상 그 자체이다. 양반 계급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고전 지식을 구축하는 기본 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그 결과물로서의 디지털 지식 DB 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조선 전기는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도와 시각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전기의 이념적 상황과 사회적 현실을 선형적으로 전제하고, 이 틀에 맞추어 역으로 시대를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크다. 조선 전기 여성에 대한 시각과 연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그대로 노출되어 왔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popodidi@pusan.ac.kr

고전 여성 지식 자료로 검토해 본 『실록』에서, 여성의 이름, 그들의 경험과 언어가 등장하는 사건과 장면은 일회성, 단발성을 가지고 있었다. 왕실의 특정 여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10건 이내의 데이터로 추출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또는 의사에 반해 경험한 일(사건)들은 역사적 변환과 맞물린 것들도 있지만, 관련된 여성과 남성들 그들 자신만의 것인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실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개별’성은 어느 정도까지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생생한 이름으로 남은 당시 여성들의 경험과 언어를 어떻게 고전 여성에 관한 지식의 체계 속에서 위치지어야 할까. 하나하나의 이름을 중첩된 디렉토리의 최소/최소 단계에서 설정한다는, 지식 설계의 기본 방향에 관한 공감의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전 지식 체계의 구성에서 그 최소 단위 또는 영역은 이를 구성하는 개인과 사건, 즉 무수한 개별성에 대한 고려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층 여성으로서 조선 시대 여성들이 겪었던 몇 겹의 배제를 생각하면 ‘그녀/들’을 계급과 집단의 이름으로 다시 정형화시킨 고전 지식 체계는 앞으로의 지식 체계에서 창조적인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관점은 고전 지식 체계에 ‘낮고 폭넓은 수준의 개별적 최소 단위’를 기점으로 한, 무수히 중첩된 디렉토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상상을 요청한다.

주제어 : 여성사, 조선왕조실록, 여성주의, 디지털, 고전 지식 DB, 조선 전기

1. 서론: 문제의 제기

『조선왕조실록』(및 그 DB, 이하 『실록』)은 여성에 관한 자료로서 전면적인 주목은 받지 못했다. 주로 몇 명의 왕후와 언문서, 女樂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자료로 그 일부가 한정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강명관(2016a·b)의 연구와 같이, 조선 왕조가 시작된 이래, 조선 시대 여성들의 삶이 ‘유교화’라는 명분하에 통제되어 가는 과정을 『실록』을 통해 규명한 성과가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실록』은 제도와 법률, 풍속 등 여러 방면에서 조선 시대 여성사의 중요한 자료로서 다시 읽히고, 그 지식과 정보들은 새로운 시각과 지평에서 조직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 그 새로운 지평을 대표하는 場의 하나가 바로 디지털이다. 지면의 활자(또는 그로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출할 수 있는 多岐한 정보)들을 多次元으로 교직하여 여러 겹, 여러 켜에서 과거의 삶을 응시하는 일이 실현 가능한 첨단 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우리가 지금 주로 활용하고 있는 고전-지식 체계의 근간은 ‘중세’라는 시스템의 復記, 또는 그에 대한 회귀적 상상 그 자체라는 점이다. 양반 계급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고전 지식을 구축하는 기본 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그 결과물로서의 디지털 지식 DB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지식 체계를 구성하는 정보들은 정보의 집성자/기록자, 또는 집성과 기록의 주체에 따라 정보/대상에 대한 다른 위상과 욕망을 투사하여 조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이 주목한, 대표적인 고전-지식DB인 『실록』은 왕실-사족-남성에 관한 공적 자료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기본적으로는 상층-남성 중심의 기록이며 사건을 기술하고 인물을 평가하는 시각은 ‘남성 중심적’이다. 고전 지식DB를 구축하는 원 자료가 漢字로 된 刊本 자료와 상층의 자료들을 위주로 먼저 축적-연구되어 왔고, 이것이 상층-남성 중심의 지식체계라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온 고전 지식의 체계는, 조선(또는 과거 삶)의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한, 절반의 체계이다. 양반 외, 실제로는 조선 사회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良人 남녀와 奴·婢, 사족 여성들에 관한 지식이 온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적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공적·사적 영역에서 상호적으로 관계 맺고 있었던 사실 자체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그 양상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를테면 양반(사족) 남성-남성의 자료는 ‘朋友’ ‘師友’ ‘師弟’, ‘政敵’ ‘黨派’를 비롯한 그들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망을 구현할 지식 정보들이 어느 정도 발굴되어 있다. 시소러스는 그런 관계망을 의식한 디지털 지식의 한 체계이다. 반면, 여성-여성, 남성-여성의 관계에서의 상호 관계성은, 관계성 자체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단

선적이다. 무수한 자료들이 수집, 번역되고 디지털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資源들을 ‘어떻게 (다시)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보아야 한다. 이 질문에서 출발해 고전 지식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새롭게 지식 資源들을 읽는 상상력의 지평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장 앞서고도 치밀한 논의를 전개한 연구로 최기숙(2017)이 있다. 이 글은 『실록』(및 그 DB)를 자료로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¹⁾

자료를 검토하는 시기는 조선 전기로 국한했다. 『실록』은 조선 전기와 후기의 역사 기록 양상이 다른데²⁾, 전기의 『실록』은 보다 다양한 자료들, 거칠게 말하면 ‘날 것의 자료’라 할 만한 내용들이 그대로 실려 있다. 즉, 일면 왕조의 정사로서 한계가 있지만, 조선 전기의 『실록』은 ‘왕조의 실록’을 구축하는 역사 편찬의 의식이 ‘생성되어 가는’ ‘과정’ 중의 생동함과 역동성이 보다 살아 있다. 실제로 17세기 이후의 『실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黨派와 性理學 등 비롯한 특정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검열과 조작, 조정의 시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왕별로 그때그때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많은 자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기사 중에는 개인의 雜記를 비롯하여 野史의 기록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것도 있다. 김준형(2016)은 時政記와 같은 사초 외에 雜錄·筆記를 비롯한 개인의 기록들이 『실록』의 사초로 활용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의 뒤섞임과 다양함 속에서 조선 전

-
- 1) 원론적인 언급과 사례의 제시를 넘어 고전 지식과 그 체계의 하나로서 디지털 DB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이 탐색되어야 하는데, 이 진전된 단계는 필자의 역량 밖인 듯도 하고, 좀 더 크게는 인문학의 시선과 디지털 분야의 기술이 어울려야 할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라고도 생각된다. 선언적인 그리고 원칙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글의 한계이다.
 - 2) 임진왜란 이후 많은 자료의 산실과 함께 실록 편찬을 위해 재야의 개인/자료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실록 기록의 엄정성을 요구하며 실록의 작성에서 많은 다양한 자료를 배제하는 데 기여했다. 무수한 사건과 인물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과 정보를 담은 자료들이 실록이라는 場에서 부딪치게 되자, 선택과 배제의 기제가 더 날카롭게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17세기 들어 당론과 당색이 강화되면서부터 실록의 기록은 집권당의 입장이 강하게 투영되었으니, 改修 실록의 편차가 이를 입증한다.

기의 생생한 국면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조선 전기와 후기를 묶어 일괄적으로 이해하거나 단일한 잣대로 조선 역사 전체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 전기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조선시대 여성 지식의 資源으로서 『실록』이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 전기의 여성에 관한 지식은 王室과 士大夫, 그리고 妓女로 범주화된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몇 명의 왕비와 세자빈, 허난설헌·신사임당·호연재 김씨·송덕봉과 같은 사대부가의 여성, 그리고 황진이·매창과 같은 기녀들의 삶과 언행이 이 시대 여성에 관한 지식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전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구도와 시각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 전기의 이념적 상황과 사회적 현실을 선형적으로 전제하고, 이 틀에 맞추어 역으로 이 시대의 여성을 판단·이해하려는 경향이 크다. 즉 조선 전기 여성으로서 이들이 보인 행동·선택과 판단, 언어, 문자 행위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시대 여성사·자원의 맥락에 있지 않고, 조선 후기적인 관점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임당과 황진이, 허난설헌과 같은 여성들은 평지돌출적인 존재가 되어 '위대한 母性' 또는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와 같은 편파적이고 부분적인 이미지를 거듭 재생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조선 전기의 여성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특성들이 많은 부분 소거되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17세기 이후 여성사의 경우, 자료의 수집과 분류, 체계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 상당 부분 진전되어 있다. 남성·사대부들이 여성에 관해 기록한 한문 자료들이 문집에 대거 남아 있고, 현대에 이르러 이 자료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집, 번역되었다. 남성 사대부의 문자라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김기림(2017)에 의하면, 이 성과를 근간으로 조선 중기 이후 여성사를 재구하는 작업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하다.

조선 전기의 경우는 이와 달라 우선 文集에서 여성과 관련된 자료, 여성(에 관한) 지식의 베이스를 구성할 만한 자원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여성에 관한 지식 자원으로서 문집 자료가 갖고 있는 한계는 차치하고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전기의 『실록』은 고전 여성 지식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자료로 주목된다. 개인 문집을 비롯하여 이 시기에 다양하게 산출된 雜記들과의 정밀한 교직을 염두에 두면서 『실록』에서 논의를 출발해 보자.

2. 고전 여성 지식 資源으로서 『실록』

이 장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록』 DB³⁾의 체계에 여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살피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고전 지식 DB 체계에 여성에 관한 지식 자원이 재-배치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방식은 무엇인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록』 DB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번역문·원문 외에 별도로 만들어진 DB가 있다. <자료 열람> 옆에 <부가 열람>이라는 세션이다. <부가열람>의 하위 디렉토리는 ‘관인’ ‘관직’ ‘신분’ ‘선원계보도’ ‘분류색인’ ‘분류색인 검색’ ‘용어 색인’이다. 각 하위 디렉토리 내 정보들의 배열의 기본 순서는 인명 가나다 순인데, 주된 축은 왕실/양반/남성이다.

첫 번째 하위 디렉토리인 ‘관인별 열람’ 영역에는 91개 본관, 110개의 성씨를 축으로 각 본관·성씨가 배출한 관인이 배열되어 있다. 각 성씨 영역에는 문반, 무반, 남녀의 구분 없이 신분·자·호·시호·본관·생몰년이 제시되

3) 기존 실록 DB의 문제점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실록』과 조선 시대의 여성에 관한 지식이라는 문제 사이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실록』을 읽어가던 중, 이처럼 매우 유용한 분류 체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자칫 실록의 번역과 DB구축을 위해 고생한 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될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어 있다. 두 번째 하위 디렉토리인 '관직별 열람' 영역에는 2,495개의 관직이 관직명 가나다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왕대-성명-본관과 생몰년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균관 대사성은 조선 전체에서 약 1,097건이 나오는데, 1406년(태종6) 10월 9일 현직 상태이던 서산 유백순부터 1894년(고종31) 6월 25일 현직 상태이던 전주 이수만까지가 확인된다. 이어 지방 현감과 군수, 향교의 교관 등 여러 관직들이 표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누락된 정보가 상당히 많으며, 기본 정보가 추출되어 있는 기초 단계에 있다. 여성의 관직으로는 '상궁'과 '전언' 같은 내명부의 직제가 있다. 그중 상궁은, <부가 열람>의 '관직별 열람'에 영역은 할당은 되어 있으나, 순조대의 상궁에 관한 두 건만 나와 있다. '전언'은 세조~성종대까지 활동했던 궁인 曺豆大의 유명세가 있어 그런지 그녀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만, 광해군대에 활동했던 전언 김씨에 관한 정보는, 『실록』 본문 기사가 있음에도, 빠져 있다. 이런 현상들은 남성들의 관직에 대한 데이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향후의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세 번째 하위 디렉토리인 '신분별 열람'은 <왕실> <양반> <중인> <양인> <천인>이라는 5개 영역이 있고 그 아래 각각 더 세분화된 항목이 있다. 각 영역에 들어가 보면 명칭(인명) 가나다 순으로 기본 정보가 배열되어 있고, 해당 명칭(인명)으로 검색된 기사를 링크해 두었다. 數多한 여성들의 이름과 경험, 언어가 『실록』이라는 자료에 잠복해 있음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다. 즉, 당대에 논란이든 파장이든, 磁場이 컸던 사건의 중심에 있던 양반·양인 여성들을 비롯하여, 여러 여성들에 관한 정보가 열람의 체계에서 반영되고, 고전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자원임을 보여준다.

먼저 '신분별 열람'의 <왕실> 영역은 '왕' '비빈' '왕자/공주' '종친'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비빈'에서는 내명부의 명칭 순으로 경빈 박씨부터 희빈 홍씨까지 61건, '공주'는 '왕자/공주' '종친' 디렉토리에서 8건이 나온다.⁴⁾ 사실 비빈이나 왕자/공주에 관한 지식은 웹 기반 자유콘텐츠 백과사전인

4) 경순공주, 의순공주, 정명공주, 정순공주, 정신공주, 화완공주이다.

위키피디아의 「한국의 왕자와 공주」, 「조선의 역대 왕비」의 정보와 링크가 유용하다. 이 역시 『실록』의 기록을 주요 資源으로 하면서도, 多者가 작성한 정보들을 비교적 정교한 링크로 연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선과 접근 각도를 가진 지식 정보의 작성자들이 있다는 점, 수정과 편집이 용이한 만큼, 오류의 여지를 가지면서도, 지식 자원들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시사적이다.

‘신분별 열람’의 〈양반〉 영역은 6,3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지만, 문반/무반 모두에서 양반-여성과 관련된 지식 정보는 없다. 실제로 당대에 상당한 논란/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양반-여성들이 있다. 사족 여성으로서 ‘三嫁’를 하면서 조정과 사회에서 논쟁을 일으켰던, 고려 후기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金湊(1339~1404)의 딸 김씨, 현감 임수산의 딸로서 처첩 소생간의 재산 문제가 연루된 강간-간통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任福非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양반 여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양반에 관한 지식이 ‘양반→남성’만을 전제하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분별 열람’의 하위 디렉토리 중 하나인 〈양인〉 또한 여성 관련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반면, 〈천인〉에서는 기녀와 궁인, 창기와 무당, 도합 수백 명의 여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대비된다. 실제로 여성에 관한 지식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전 지식의 토대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 ‘양반/양인’에서는 ‘남성’만이 설계의 대상이 되고, ‘천인’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설계의 대상이 되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었음을 드러낸다.

‘신분별’의 〈중인〉 영역에는 ‘내관/나인’ ‘기술관’ ‘서리’ ‘향리’ ‘군교’ ‘역리’ ‘서얼’ ‘기타’의 하위 항목이 있다. 여성과 관련된 영역으로 ‘내관/나인’ 항목의 총 779건 중 ‘나인’ 데이터가 77건이 분류되어 있다. 인명 순서대로 목록화가 되어 있고 그 인명을 클릭하면 인명이 거론된 『실록』 기사가 떠오른다. 『실록』에서 이들 궁인들은, 대체로 ‘강상-윤리’의 문제로 표명되는 ‘通奸’, 정치적 사건, 재판 등의 사건과 관련해서 분류의 체계에 편입된

경우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여성들이 있다. 『실록』에 실린, 1498년(연산군4) 무오사화 때 잡혀 들어갔던 궁인 80명의 명단은, 우리가 흔히 ‘黨籍’이라 말하는 무오사화, 갑자사화와 같은 被禍人의 명단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대상 인물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기사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독자가 서사를 엮어 가야 한다. 게다가 비슷한 발음을 가졌거나 동일한 이름으로 보이는데 良女와 기녀, 무당 등에서 불분명하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사실 관계의 차원에서 향후 정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기타’ 항목에서는 포교/의녀 영역에 ‘의녀’로 21명의 이름이 연동 기사와 함께 분류되어 있다. 앞서의 궁인들과 비슷하게 간통 사건에 관련되어 거론되는 경우도 있고, 연산군의 폭정을 고발하는 고발자로서 등장하기도 한다. 의녀의 직능과 관련해서 잇병을 잘 고치는 의원으로 장덕이라는 성종대 의녀도 거론되는데, 제주목사에게 이, 눈, 귀 등 아픈 곳에서 벌레를 잘 제거하는 사람을 뽑아 기록해서 보내라는 치서의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역시 성종대의 관료 成倪이 쓴 『용재총화』의 권10에 아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어 의녀의 직능과 관련된 정보를 『실록』과 야사 자료를 함께 읽음으로써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검색 건수의 多少를 근거로 분류하다 보니 포교와 의녀가 ‘기타’에 속해 있지만, 상위 영역으로 노출할 필요도 있다. <중인>의 직제가 기술관, 서리, 향리, 군교, 역리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 일면 사소해 보이지만, 단발성과 개별성을 ‘기타=사소함’으로 판단해, 하위의 하위에 埋藏하는 것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전 지식 체계를 만들면서 여전히 고수해야 할 방식은 아니다. 즉, 고전 지식 체계를 상상하고 만들어낼 때, 지식 資源 각각의 무게를 가늠하는 시각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분별 열람’의 <천인> 영역에는 ‘노비’ ‘백정’ ‘무당’ ‘창기’ ‘광대’ ‘승려’ ‘기타’의 하위 항목이 있다. 그중 ‘노비’(2,035건), ‘무당’(30건), ‘창기’(190건)에서 여성 관련 데이터를 가장 많이 추출해 놓았다. ‘노비’의 데이터가 압

도적인데, 노와 비를 구분해 놓지 않았으므로, 기사를 통해 성별을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기녀’는 네이버에서 「조선 시대 기녀와 문화」라는 콘텐츠를 열어 총 345건 기녀의 이름/활동 장소와 시기/관련 인물과 작품/설명/출전을 밝히고, 『실록』과 같은 정사, 각종 야사의 기록 내용을 다이제스트한 문헌자료를 역시 350건 가량 구축해 놓았다. 단편적인 기록들을 사실 위주의 1~2줄 문장으로 써놓았는데, 여기에 언급된(링크되지 않은) 원 자료를 다시 찾아 확인해야 해당 인물과 사건(에피소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실록』의 자료와 연동한다면, 풍부한 여성 지식을 구축할 만한 자원이다.

수치로도 확인되지만, 〈부가열람〉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분류한 영역은 ‘신분별 열람의 〈천인〉, 그 중에서도 ‘奴·婢’영역이다. 조선 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노비의 인구가 士族인구보다 훨씬 많았고 이들의 노동과 봉사, 그리고 이들과(간)의 관계가 일상을 구성하는 영역이었던, ‘노비제 사회’였던 조선 전기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정보는, 단지 인명순으로 배열되어 있을 뿐이고, 노와 비의 구분도 없으니, 노와 비 각각의 세부 영역에서 어떤 지식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다른 ‘개인’들과의 관련성이 개입된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정보도 이 지식의 체계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양반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을 DB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고전 지식의 체계를 설계 하면서, 어떻게 다시 읽어내 고전 지식 체계의 일부로 재-구성함으로써 역사적 실상에 근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상상력과 기술 차원의 노력이다.

현재까지 구축된 『실록』 DB의 〈부가열람〉은 ‘번역문/원문’에서 키워드로 뽑혀온 일차 자료를 직렬로 연결해 놓은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사실의 추출과 통계에는 유리하지만, 여성에 대한 지식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아직은不利하다. 나아가 여성의 삶들을 연결 짓고 형상화하는 데

에는 몇 단계의 추가된 과정이 필요하다.(이런 상황은 남성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서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된다.) ‘개별자’로서 그들의 경험과 언어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성주의 관점의 점검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는 ‘분류’ 이전, 『실록』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록』 DB를 포함하여 현존하는 고전 지식 DB의 부분적인 보완을 넘어서, 고전 디지털 DB의 원천으로서 고전 지식 구축에서의 지평의 전환을 요청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고전 지식의 체계는 방대한 성과를 담고 있는 훌륭한 성취임이 분명하지만, 남성-상층의 漢字로 기록된 정형화된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 방식으로 구축되어 왔다는 점에서 ‘절반의 조선’에 관한 지식 체계이기 때문이다.

3. 『실록』에서 추려낸 여성 경험과 언어의 사례들

이 장에서는 조선 전기의 『실록』을 자료로 하여 당대 여성들의 경험과 언어를 추출해 보려고 한다. 목표는, 『실록』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당대 여성에 관한 지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선 전기 여성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지식 資源化할 때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생각해 볼 것이다. ‘그녀들이 경험한 ‘사건’,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녀들이 한 말, 가졌을 감정에 대해서도 여성에 관한 지식 자원으로서 접근한다. 연루된 또 다른 여성들과 남성들, 그 ‘관련자’들의 언어와 감정, 경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사건’이라 불릴 만한 ‘사실’의 살과 뼈대를 이루는 감정의 결과 언어의 층위, 그리고 그에 담긴 多岐한 의미들이 탐색되고 추출될 때, 새로운 관점의 고전 여성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1) ‘상전’과 ‘家長’의 非違를 법령에 告訴하다: 대비, 경이

조선 전기의 천안·여성이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이 겪는 부당한 일에 대해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예종(재위 1468~1469) 때의 大非와 성종(재위 1469~1494) 때의 景伊는 직접 전면에 나서서 정면으로 고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대비는 평양부 소속 관비였는데, 지방관으로 또는 사신의 접대를 위해 평양부에 온 관료들의 불법적인 기생 침학을 直告했다. 경이는 강제로 종실 사람의 첩이 되었다가 자기의 의사에 반해 다시 강제적으로 버림받았다. 그러자 그는 종실 남성의 공납 비리를 사헌부에 고소하고, 자신이 버림받는 과정에서 종실 남성이 자신에게 저지른 경제적 침탈도 아울러 고발하면서 자기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했다.

먼저, 대비는 1469년(예종 1) 한여름, 평양에서 서울까지 직접 가서 평양부윤 이덕량(과 그의 종자 박종직), 평안도관찰사 어세겸, 평양도도사 임맹직을 喪中에 通奸한 혐의로 몽땅 고소했다.⁵⁾ 대비의 고소는 지방관들의 성적 일탈을 남김없이 고발한 것이다.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은 ‘國喪 중의 통간’이었다는 점(①⑤)과, ‘관비에게 함부로 형을 가하여 죽게 했다’는 점(③⑦⑧)이었다. 예종은 이 고소장을 승정원에 보이고, 연루된 사람을 붙잡아 오도록 조치했다.

“부윤 李德良의 伴人 朴從直은 ①기생 望玉京과 간통하고 또 笑西施와도 간통하려 하였는데, ②소서시가 응하지 않자 박종직이 원망을 품고서 이덕량에게 호소하니, ③이덕량이 그 어미 內隱伊와 소서시 등에게 곤장을 때려서

5) “○平壤府官婢大非, 狀告憲司云: “府尹李德良伴人朴從直, 奸妓望玉京, 又欲奸笑西施, 笑西施不應, 從直銜之, 訴德良, 德良杖其母內隱伊及笑西施等, 幾死. 大非欲告觀察使, 而以府民之訴, 無人書給告狀. 且觀察使魚世謙, 通妓含露花, 都事任孟智, 通楚腰輕, 留本府已四月, 專不聽理. 母既杖死, 告于觀察使, 亦不聽. 德良又杖兄弟二人, 以笑西施爲功臣丘史, 將欲侵虐本府, 又以母死, 給奠饌賻物, 沮吾申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 大非가 관찰사에게 고하고자 하였으나, ④府民의 소송을 가지고 告狀을 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⑤관찰사 魚世謙은 기생 含露花와 간통하고, 都事 任孟智는 楚腰輕과 간통하였으므로, ⑥분부에 이미 4개월이나 머물러두고서 전혀 청리하지 않습니다. ⑦어미가 이미 곤장을 맞아 죽었으므로 관찰사에게 고하니,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덕량은 또 형제 두 사람에게 장을 때리고, ⑧소서시를 功臣의 丘史로 삼아 본부를 침학하고자 하였으며, 또 어미가 죽자 ⑨奠饌과 賻物을 주어 내가 申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17일 무술(2).

이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종은 전교로 “娼妓는 산담과 물오리와 같으니,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변한다”⁶⁾고 했다. 창기를 표현하는, 당대 남성들의 일반적인 언어였을 터이다. 그런데, 소서시는 박종직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신의 종자인 박종직이 싫었을 수 있고, 국상 중이라는 금령을 의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소서시는 그 요구를 ‘거절했다.’²⁾는 그런 의미 있는 사실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거절로 인해 소서시와 그녀의 가족은 곤장을 맞았고(③) 어머니는 죽었다(④). 그리고는 祭物을 주고 일을 무마하려고 했다. (⑧⑨). 관찰사가 이 고소장을 제대로 접수하지 않고, 접수한 뒤에도 4개월이나 지체했던 것은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⑤). 그러자 대비는 중국 사신의 일로 평안도에 온 황해도도사 정효종과 찰방 신복담의 통간도 적발해 버렸다. 대비가 이 고소장을 냄으로써 여기에 연루된 관료는 물론이고, 이름이 거론된 기생들도 국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私刑을 가한 이덕량을 斬刑으로 照律해야 한다는 판결이 의금부에서 나왔다. 종당 이덕량은 畧身을 거두고, 박종직은 장 1백대에 전 가족을 극변유배하는 형벌에 처해졌다.⁷⁾

6)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2일 기사(5). “傳曰:“(前略)娼妓如山雞野鶩, 雖朝更夕變”

7)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23일 갑술(1). “○甲戌/義禁府啓: “李德良濫刑官婢致死, 罪當斬.” 上曰: “德良, 大臣, 無乃太過乎?” 院相上洛君 金碩, 都承旨權城等啓: “德良罪應死, 但功臣且獨子, 惟上處分.” 時, 永順君 溥, 河城君 鄭顯祖及領議政洪允成, 左議政尹子雲, 右議政金國光, 右贊成盧思愼, 左參贊任元濬,

대비의 고소는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部民告訴禁止’의 법을 어긴, 直告였다. 최병조(2014)와 백승아(2014)의 연구에 따르면, 세조대에 몇 차례 直告가 용인되었지만, 고소가 빈발하는 상황이 되면서, 예종은 즉위와 함께 이를 금지한 바 있다. ④에서 고소장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 것은 그런 상황을 드러낸다. 이런 상황에서 상전과 가장의 성적 일탈이나 불법을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뜨거운 한여름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가서 결행한 대비의 고발은 힘겨운 것이었고, 그 바탕에는 관료들의 不法不當한 色貪에 대한 크나큰 분노가 있었다. 그러한 대비의 사례는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라 해서 그 파장과 의미가 감쇄될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살피지 못하지만, 이 고소의 텍스트가 담고 있는 한 여성의 고발과 고소를 둘러싼, 여성 그 자신과 관련자(또다른 여성들과 남성들)의 감정과 언어는, 이 시대 여성에 관한 지식 자원으로서 의미 있게 분석, 추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윤은로(성종 비 정현왕후의 형제)를 고발한 景伊의 사례를 보자. 경이는 처음에 京妓 탁문아로 불렸다. 종실인 강양군 李融의 첩이 되었는데, 좌승지 윤은로가 강양군에게서 경이를 ‘빼앗으니’, 경이는 그의 첩이 되었다.⁸⁾ 1486년(성종 17) 사헌부에서는 이를 추국해야 한다고 했는데 성종은 이 일을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이고, 강양군이 준 수세(休書)가 있으니, 윤은로가 경이를 그 남편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서로 헤어진 것’이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강양군과 탁문아(경이)의 이별 과정이 자연스럽게

右參贊洪應等, 以事詣闕. 命會承政院, 更召德良, 問其情由, 若直對, 則猶或可原, 少有隱諱, 則當不假貸. 且笑西施等事干各人, 竝參鞫德良之言以聞. 允成鞫之, 所言大同矣. 上曰: “德良只收告身, 餘皆釋之.” 謂德良曰: “汝侍從世祖久矣, 豈不知當時之法? 今予一遵世祖之法, 而汝大臣, 略不顧忌, 枉刑乃爾, 死有餘辜. 第以戚屬, 侍從先王, 爲功臣, 故特赦之.” 允成等啓曰: “德良伴人朴從直, 丁國恤奸妓, 此實罪根, 請依律杖百, 全家徙極邊, 望玉京亦依從直罪.” 上曰: “從直依律, 望玉京勿論.” 又命戶曹, 復內隱伊子女一年. 德良, 武人也, 其尹平壤也, 無續用. 從者從直, 頗張氣勢, 以至於此, 黃海道都事鄭孝終, 察訪辛福鼎, 亦因中朝使臣, 往平壤縱酒淫妓, 爲大非援連見鞫, 竟不坐, 遂還其任.”

8) 『성종실록』 198권, 성종 17년 12월 21일 임진(4).

거나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었음은 분명했다.

사헌부 장령 이계남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전략) 이제 홍상과 尹殷老는 <강양군> 이용 등의 첩을 빼앗아 간통하였는데, 전하께서 축이 수세(休書)가 있다는 것으로써 홍상과 윤은로를 모두 논하지 말게 하셨으니, ①그 이른바 수세라는 것은 이름 자가 없고 또 연월이 없으며, 또 즉시 바쳐서 실정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이튿날에야 바쳤으니, 그 사이에 부정과 허위를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것으로 논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중략) 서로 妻妾을 빼앗는 것은 풍속을 손상시키는 큰 것인데, 燕輕飛와 ②卓文兒는 비록 娼妓라고는 하더라도 宗親의 집에서 데리고 있는 첩이 되었고, 더군다나 탁문의 딸이 璿源錄에 실려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홍상과 윤은로는 모두 椒房의 至親으로서 몸이 極品에 있고 벼슬이 喉舌에 있으면서 情慾을 참지 못하여 淫邪를 방자히 하였습니다. 盛하게 다스리는 때를 당하여 敗常罪를 먼저 범하였으니, 마땅히 한 사람을 징계하여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전연 놓아두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니, 신 등은 그욕이 두렵건대, 법의 시행되지 않는 것이 貴近으로부터 비롯될까 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친근하고 귀하다고 하여 법을 굽히지 마시고 풍속을 바로잡소서.” - 『성종실록』 198권, 성종 17년 12월 22일 계사(3)⁹⁾

우선, 사헌부에서는 이혼 증서인 수세가 급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①). 또 경이가 종실인 강양군의 첩이 되어 낳은 자식이 왕실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면, 왕실의 혈통임을 강조했다(②). 합당한 의심과 혈통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건에 접근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사자 탁문아(경이)의 입장이 분명했다. 전 남편인 강양군과 이혼 증서를 나누어 가진 정상적인

9) “○司憲府掌令李季男等上劄子曰：(前略) 今洪常，尹殷老奪奸瀟等之妾，殿下乃以瀟有休書，洪常，殷老竝令勿論。其所謂休書者，既無名字，又無年月，且不能即緘輸服，翼日乃納之，其間詐偽，又未可知。而論以的實可乎？(中略) 相竊妻妾，傷風之大者也。燕輕飛，卓文兒雖曰娼妓，爲宗親家畜妾。況卓文兒之女載在《璿源錄》，人所共知，而洪常，殷老俱以椒房至親，身居極品，位在喉舌，不忍情欲，恣行淫邪。當盛治之時，首犯敗常之罪，所宜懲一人以警其餘者也。殿下全釋不治，臣等竊恐法之不行，自貴近始也。伏願殿下勿以親貴撓法，以正風俗。

이혼의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윤은로의 탈취에 따른 이별이었는지를 묻자, 탁문아는 ‘탈취’라는 취지로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¹⁰⁾ 이렇게 사헌부에서 이혼 증서의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당사자인 탁문아가 명확하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탁문아는 강제적으로 윤은로의 첩이 되었다. 윤은로의 난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강제로 탁문아를 취한 뒤, 2년 뒤에는 탁문아를 버렸다. 탁문아로서는 두 번째 棄別이었다. 탁문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1494년(성종 25) 사헌부에, 이제는 동지중추부사가 된 윤은로를 고소했다.

당시 『실록』 본문에 달린 사관의 논평을 통해 탁문아가 경험했던 [강제로 첩 되기·다시 버림받음·재산 빼앗기와 반환 소송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탁문아의 말은 매우 자세하다. 탁문아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과 분노, 윤은로의 비리를 드러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한 명의 관비가, 왕비의 형제를 상대로.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동지중추부사 윤은로가 버린 첩인 관비 景伊가 윤은로를 사헌부에 고소하기를, “①10년 전에 중추가 婢를 첩으로 삼았다가, 2년 뒤에 나를 본가에 팔아서 綿布 1백 58필을 받았습니다. ②중추는 市人 文長守·鄭莫同으로부터 綿布 각각 50필을 빌려, 中部 정선방에다 집을 사서 살았는데, 그 뒤에 ③伴人 朴永生으로 하여금 사재감에 납부할 晉州의 大口魚를 방납케 하여 면포 8 疋을 얻어, 1백 필은 문장수·정막동에게 상환하고, 그 나머지 면포는 박영생의 대구어의 값으로 쓰게 하였으니, ④집을 산 자금은 모두 婢家와 방납 면포이고, 중추의 집 물건이 아닙니다. ⑤중추가 전년에 나를 버리고 우리 집을 빼앗으려고 꾀하여 다방면으로 侵擾하므로, ⑥分揀하여 주도록 빌어 사헌부에서 안험하였으나, 박영생 등은 모두 直招하지 않으니, 刑推하기를 啓請합니다.” 하였다. -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1일 무진(4)¹¹⁾

10) 『성종실록』 198권, 성종 17년 12월 24일 을미(2). “殿下酒謂事在曖昧, 棄而不治, 臣等未知所以曖昧也. 卓文兒等不敢遁情, 一致平問, 盡輸無餘, 而謂之曖昧可乎?”

11) “○同知中樞府事尹殷老棄妾官婢景伊訴殷老子憲府曰: “在十年前, 中樞以婢爲妾, 後二年賣我本家, 受綿布一百五十八匹. 中樞從市人文長守, 鄭莫同貸綿布

고소장은 윤은로가 강양군에게서 강제적으로 빼앗은 자신을 본가의 되팔고선 돈을 받았다는 것(①)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뒤에 시장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집을 샀고(②) 방납으로 이익을 취해 그 빚을 갚았다.(③) 그런데 윤은로는 도리어 탁문아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④), 이 ‘약탈’의 증인이 되어줄 박영생 등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탁문아는 집에 대한 권리는 윤은로가 아니라 자신에게 절반이 있음을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

윤은로는 성종 비 정현왕후의 동생이다. 그의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없다. 그러나 거둬 높은 지위에 한창 오르던 중이었다. 강양군의 첩이던 탁문아를 강제로 취했을 때에, 성종은 이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했고, 탁문아의 남편 강양군도 윤은로에게 저항하지 못했다. 대간들은 윤은로가 ‘綱常을 무너뜨린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지만 성종은 그를 벌주지 않았다. 아래에 탁문아의 고소장을 접한 성종의 반응과 사관의 논평을 붙인다.

진교하기를,

“윤은로는 전에 이조참판이 되어 방납으로 비방을 받았으니, 윤은로가 비록 용렬하나 반드시 다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景伊는 본시 창녀이다. 朝士가 비록 娼妓에게 사사로이 함은 옳지 못하나, 누가 이를 쫓이라 하지 않겠는가? 여러 해를 동거하였으니, 夫妻의 분수가 이미 정해졌거늘, 바로 감히 憲府에 고소하여 陷害하려고 도모하였으니, 그 風教에 관계됨이 크다. 한성부로 하여금 먼저 그 죄를 바로잡게 한 뒤에야 分揀함이 옳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各五十匹, 買家于中部 貞善坊而居, 其後使伴人朴永生, 防納司宰監納晋州大口魚, 得綿布八同, 以一百匹, 償文長守, 鄭莫同, 其餘綿布, 朴永生以大口魚之價用之矣. 買家之資, 皆婢家及防納縣布, 非中樞家物也. 中樞前年棄我, 謀欲奪我家, 多方侵擾, 乞令分揀, 司憲府案之, 永生等皆不直招, 啓請刑推.” 傳曰: “殷老, 前爲吏曹參判, 以防納被謗, 殷老雖庸劣, 必不復爲矣. 景伊, 本娼女也, 朝士雖不宜私於娼妓, 然孰不以此爲妾乎? 累年同居, 夫妻之分已定, 乃敢訴于憲府, 謀欲陷害, 其有關於風教, 大矣. 令漢城府, 先正其罪, 然後分揀可也.”

“景伊는 곧 京妓 卓文兒이다. 종실 강양군의 첩이었는데, 윤은로가 貴顯하여지자 교만하고 거만하여,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으니, 강양군이 다들 수가 없었다. 윤은로는 본시 가정 교육이 없는데다 또한 학식마저 없었다. 오직 이익만을 도모하여 승지가 되고, 이조참판이 되니, 賄賂와 苞苴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또 방납으로 財貨를 얻어 집을 사서 탁문아에게 주어 살게 하더니, 이에 이르러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지고 뜻이 쇠하여, 또 小妾을 얻어 탁문아의 집을 빼앗으려고 하니, 드디어 탁문아가 고소하게 되었다.” 하였다. -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1일 무진(4)¹²⁾

성종은 이 고소장을 받고 전교하면서, 이 일을 ‘첩이 자기의 남편을 고소한’ 風敎의 문제로 몰아갔다. 거듭 ‘집을 사서 여러 해를 동거했으니 남편과 첩으로서의 명분이 정해졌는데, 버림받았다고 해서 혐의를 품고 남편의 비리를 마구 드러냈다고 도리어 탁문아를 비난했다.¹³⁾ 게다가 성종은 이미 끊어진(윤은로가 스스로 끊어버린) 두 사람의 관계를 거듭거듭 夫-妾으로 규정하려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남편-첩의 관계로 설정하게 되면, 탁문아는 ‘告尊長’ 즉, 자손·처첩·노비로서 부모, 家長의 비행을 고발한 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만다. 그 결과는 絞刑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었다.¹⁴⁾ 지근한 종친인 윤은로를 보호해야겠다는 판단이, 탁문아를 극형을 받을 수 있는 풍교의 죄인으로 몰아가도록 했던 것이다. 반대로 사헌부 관원들은 여러 법률을 상고하여 ‘棄妾은 凡人과 동일하다’,

12) “傳曰: “殷老, 前爲吏曹參判, 以防納被謗, 殷老雖庸劣, 必不復爲矣. 景伊, 本娼女也, 朝士雖不宜私於娼妓, 然孰不以此爲妾乎? 累年同居, 夫妻之分已定, 乃敢訴于憲府, 謀欲陷害, 其有關於風敎, 大矣. 令漢城府, 先正其罪, 然後分揀可也.” 【史臣曰: “景伊卽京妓卓文兒也. 爲宗室江陽君所畜, 殷老旣貴顯驕傲, 奪而爲己有, 江陽莫能爭之, 殷老素無庭訓, 亦無學識, 惟利是圖, 爲承旨, 爲吏曹參判, 賄賂苞苴, 不可勝言, 又防納得貨買家, 給文兒以居, 至是愛弛意衰, 又得少妾, 欲奪文兒家, 遂爲文兒所訴.”】”

13)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2일 기사(5). “傳曰: “雖一日同居, 名分已定, 況買家而累年同居乎? 娼妓如山雞野鶩, 雖朝更夕變, 然旣與之同居, 如防納之事, 以爲尋常, 而無所不爲, 一朝棄之, 則懷見棄之嫌, 暴揚其失, 豈不有關於風敎也?”

14) 『경국대전』 형전.

즉 헤어진 첩은 이전의 남편에 대해 가장의 관계가 아니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이 일은 탁문아가 윤은로의 방납의 비리를 고소한 것이 되므로, 사헌부에서는 이를 먼저 수사하여 照律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⁵⁾ 그리고 끝까지, 버림받은 첩이 가장을 고소했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¹⁶⁾ “경이(탁문아)에게는 조금도 어긋난 단서가 없는데도 여러 번 형장을 가한 것은 그 입을 완전히 막으려 한 것이다.”라고 극언했다.¹⁷⁾ 성종의 판단에 저항한 것이다.

경이(탁문아)의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 법치 정신의 구현과 왕실 외척에 대한 견제, 이런 의도가 사헌부를 비롯한 일부의 관료들에게 있었다. 사헌부의 이런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경과를 보면 탁문아의 고소는 결국 한성부로 이관되었고, 탁문아만 세 번 넘게 형신을 받았다. 그리고 윤은로의 방납 비리는 결국 노출되지 않았다.¹⁸⁾ 『실록』은 이情狀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 그럼에도 탁문아의 고소의 결과는 알 수 없다. 반면, 윤은로는 그대로 궁궐, 성종과 중전의 옆에 머물러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 그러니 비극적인 결과였을 것이라 짐작만 할 뿐이다.

사헌부를 비롯한 일부 관료들이 보인 탁문아에 대한 지지는 이 여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 그 자체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을 전횡하는 무능한 인물에 대한 비판과 징계의 의지가, 그를 용감하게 고소한 여성에 대한 지지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성적 일탈과 불법, 非違를 저지르는 권

15)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12일 기사(5). “司憲府持平柳仁洪來啓曰: “臣等初按景伊之事, 以爲雖曰棄妾, 不當如是, 故考諸律文則云, 棄妾與凡人同, 故臣等欲先推防納之事, 事若不實, 則以律外之罪啓請”

16)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1일 무(4). “○司憲府持平柳仁洪來啓曰: “景伊已畢推, 欲按律抵罪, 而無棄妾告家長之律, 若比律則可以罪之, 然防納之事若誣告, 則其罪加等矣. 請防納之事畢推後竝罪之.” 傳曰: “不可如是, 雖無正律, 宜比律先正其罪.”

17) 『성종실록』 297권, 성종 25년 12월 12일 정묘(3). “景伊略無違端, 而累加刑杖者, 欲減其口也.”

18) 『성종실록』 297권, 성종 25년 12월 10일 을축(3). “領詔獄者務欲脫免, 獨累訊景伊, 使防納之事不露形跡.”

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라는 ‘결과적인 연대’로 이어졌다.

2) 비판의 말과 권력의 정치를 하다: 개금, 덕금, 고온지, 조방, 조두대

조선 전기의 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은 두 번의 土禍를 일으킨 연산군, 그가 자행한 폭정 중 하나가 이른바 ‘한글 사용 금지’이다. 이는 자신의 폭정을 고발하는 언문 투서가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1504년(연산군 10) 윤4월 갑자사화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흐른 뒤에 있었던 일이다. 도성 궁문을 닫고 용의자를 수색하며, 상금을 걸었지만 끝내 情狀이 드러나지 않았었다. 연산군은 이 투서를 공개하지 말라 했고, 史官에게 베껴 쓰지도 말라고 했다. 그런데 『실록』에 이 투서가 전하는 것을 보면 사관은 이를 잘 보관했다가 끝내 기록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막상 이 언문 투서를 했던 궁녀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발언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궁인들은 연산군의 폭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도한 사람들이고, 그 투서가 그들의 말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선비 살해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화들의 또다른 희생자(억울한 죽음, 성적 유린)들의 발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의 발언은 여성 경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성을 갖는다.

『연산군일기』에 전하는, 언문 익명 투서는 介今·德今·古溫知·曹方이라는 네 명의 醫女의 말과, 이들을 징계하고 죽여야 한다는 고발자의 말로 구성되어 있다. 석 장의 언문이라 하고 궁녀들의 말을 요약해 놓았는데, 투서자가 자기 ‘기억에 의거’했다고 했으니, 궁녀들이 실제로 했던 말은 더 길고, 자세하며 신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사)는 익명 투서를 작성한 자의 발언이고, ①~⑩은 궁인들의 발언이다. [1]의 비판은 개금과 덕금, 고온지 등 궁인이 함께 술자리에서, [2]는 조방, 개금, 고온지, 덕금이 개금의 집에 모여서, 그리고 [3]은 개금, 덕금, 고온지가 함께 한 자리에서 나온 비판이다. 모두 서로 함께 한 자리에서였으니, 그들 사이의 공감과 연대를 증언한다.

(전략) 그 글 석 장이 다 언문으로 쓰였으나 인명은 다 한자로 쓰였으며, 첫 표면에는 無名狀이라 쓰였다.

그 내용은 첫째는,

“[1] (가) 介今·德今·古溫知 등이 함께 모여서 술 마시는데, 개금이 말하기를 ‘옛 임금은 亂時일지라도 이토록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①지금 우리 임금은 어떤 임금이기에 신하를 파리 머리를 꼴듯이 죽이는가. 아야! 어느 때나 이를 분별할까?’ 하고, 덕금이 말하기를 ②‘그렇다면 반드시 오래 가지 못 하려니와, 무슨 의심이 있으랴.’ 하여 말하는 것이 심하였으나 (나)이루 다 기억할 수는 없다. (다)이런 계집을 일찍이 징계하여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가는 곳마다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글을 던져 버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개금을 감싸려 한다.’고 上言하리니, 반드시 화를 입으리라.” 하였고,

둘째는,

“[2] (라) 曹方·개금·고온지·덕금 등 醫女가 개금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옛 우리 임금은 의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③지금 우리 임금은 여색에 구별하는 바가 없어, 이제 또한 女妓·의녀·絃首 들을 모두 다 點闕하여 後庭에 들이려 하니, ④우리 같은 것도 모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⑤국가가 하는 짓 또한 그런데 어찌 신하의 그림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아야! ⑥우리 임금이 이렇듯 크게 無道하다.’ 하였으니, 발언한 계집을 크게 징계하여야 옳거늘, 어찌하여 (마)국가가 있으되 이런 계집을 징계하지 않는가? 이런 계집을 凌遲하고서야 이런 욕을 다시 듣지 않으리라.” 하였고,

셋째는,

“[3] (바)개금·덕금·고온지 등이 함께 말하기를 ‘⑦申氏가 아니었던들 금년에 사람들의 억울함을 지음이 이토록 극도에 이르렀는가. 어찌하면 신씨의 아버지·할아버지·아들·손자를 아울러 모조리 없애어 씨를 말릴 수 있을까? ⑧우리 임금이 신하를 많이 죽여서 거동 때에는 반드시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므로 ⑨사족의 아낙을 모조리 쫓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제 집의 아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⑩어느 때에나 이런 代를 바꿀까? 하였으니, (사)이런 계집은 모름지기 징계하여야 한다.’ 하였다.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19일 정미(4)¹⁹⁾

19) “(電略) 遂辟人下封書, 其書三張, 皆以諺文書, 而人名則率以漢字書之. 始面題無名狀三字, 其意則一曰: 介今, 德今, 古溫知等, 相與會飲介今曰: “古之人君, 雖亂時, 不至如此殺人, 而今之主上, 何如主上也, 殺臣下如斷蠅頭? 吁嗟乎! 何時別此也?” 德今曰: “若如此則必不久矣, 何疑之有?” 所言雖甚, 難可盡記. 如此

궁인들은 옛 임금과 연산군을 비교하면서 그 어떤 혼란한 시대에도 없었던 바, 임금이 신하를 파리처럼 죽이며(①⑧), 여색을 광적으로 탐한다(③)는 점을 거침없이 지적했다. 연산군에 대한 평가는 ‘의리에 어긋나는 일을 마구 하며 크게 無道하다(⑤⑥)’는 것이다. 그녀들은 거듭 이런 시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②), 시대를 바꾸고 싶다(⑩)고 했다. 사람들의 공포가 극에 이른 시대(⑦), 궁인들 자신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공포는 “우리도 그 탐학의 희생자가 될 것”(④)이라는 점이었다. 자기의 삶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연산군의 폭정 앞에서, 이 여성들은 공포와 분노를 공유하며 ‘시대가 바뀌기를’ 소망하고 있다. 개금 등의 궁인이 갑자사화가 일어난 원인을 폐비 윤씨의 친모 신씨와 그 일가로 지목하고(⑦) 지독한 복수심을 표현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⑧에서는 ‘신하를 많이 죽인 연산군이 돌아다닐 때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를 포학한 色貪으로 풀고 있다’며, 폭정의 원인에 대한 자기들의 분석을 내어놓았다. 사회와 폭정의 원인에 대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다.

고발이 있던 다음날, 개금, 덕금, 고온지는 바로 국문을 받았다. 그리고 잘 알려진바 ‘언문 사용 금지령’도 내려졌다. 연산군은 언문의 존재를 감출 것을 명하는 한편, 이 일을 의녀들의 스캔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몰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당장 그날로 의녀들의 남편들이 잡혀 왔다.²⁰⁾ 여성들의 정당한 언어, 비판적 지적을 ‘성과 관련된 추문’으로 몰아가는, 시공을 초월하는(!) 전형적이며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기제이다.

之女, 未嘗懲而矯之, 故到處言之耳. 若有投棄此書者, 我當上言欲庇護, 介今必見禍矣. 二曰: 曹方, 介今, 古溫知, 德今等醫女, 到介今家言: “古之主上則不爲非義, 今之主上於女色無所區別, 今亦女妓, 醫女, 絃首等, 竝皆黠閹, 將納後庭, 如吾等得無并入耶? 國家所爲亦非, 其能矯臣下之非乎? 噫! 主上大無道.” 如此發言之女, 大懲可也. 如何有國家, 而如此之女不懲耶? 如此之女, 凌遲然後, 如此詭言不復聽矣. 三曰: 介今, 德今, 古溫知等相與言曰: “若非申氏, 今年作人之冤悶, 至此極耶? 安得并申氏父祖子孫, 而盡滅無種耶? 主上多殺臣下, 行幸時必有愧恥之心, 故盡逐士族之妻, 無乃因此, 欲爲自家之妻耶? 何時革此代耶?” 如此之女須懲之.”

20)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0일 무신(7).

[1] 전교하기를, “의녀 개금·덕금·고온지 등을 추국할 때에 그 봉해서 내린 글을 사람을 피해서 열어보고, 史官일지라도 베껴 쓰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淫夫가 반드시 많을 것이며, 그중에 반드시 미워하고 사랑함이 있어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서로 혐의로 틈을 일으켜서, 이런 일을 꾸며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 이런 뜻으로 상세히 묻되, 숨기는 자가 있거든 刑訊하고, 말에 관련된 자는 啓達을 기다릴 것 없이 곧 잡아와서 국문하라.(후략)” 하였다.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0일 무신(4)²¹⁾

[2] 柳洵 등이 빈청에서 개금 등을 국문하였다. 전교하기를, “曹方이란 자는 豆大조두대:필자의 족속으로 의심된다. 그 글에 ‘신씨가 아니었던들 어찌하여 이에 이르렀으랴.’고 하였으니, 덕금 등이 신씨와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 말했느냐? 이는 반드시 姜善의 자손 및 曹家의 족친이 한편으로는 나라를 원망하고 한편으로 이 여자에게 미움을 품어서 그러는 것이리라. 그의 족속이 金世豪·姜文弼 등 한 사람이 아니며, 두대의 족속인 曹姓 및 강선과 그 아들과 그 족속인 강성을 아울러 빠짐없이 잡아오라. 세호 등은 烙刑을 가하고, 개금 등도 刑訊하라.” 하였다.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1일 기유(3)²²⁾

이 기록에 주목한 이유는, 이 투서 사건이 군주의 폭정에 대한 당대 여성들의 경험과 시각, 지근한 거리에서 선비 살해의 현장을 목도하고, 더군다나 자신들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과 분노의 감정이 언어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투서 사건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군주의 폭정에 대한 비난과, 자신들에게 닥칠지도 모를 폭력에 대한 공포, 그런 현재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대상이 왕이고, ‘왕의 여자’라 쉽사리 치부되곤 했던 궁 안의 여성이라 할

21) “○傳曰: “醫女介今, 德今, 古溫知等推鞠時, 其封下書, 辟人開見, 雖史官勿膽書. 此人等淫夫必多, 其中必有憎愛, 而憎愛之中互生嫌隙, 構成此事, 容或有之. 其以此意詳問之, 如有諱者刑訊, 辭連者不待啓達, 卽拿來鞠之.”

22) “○柳洵等鞠介今等于賓廳. 傳曰: “曹方者疑豆大之族, 其書有云: ‘非申氏何以至此? 德今等何與於申氏, 而其言如此乎? 是必姜善之孫及曹家族親, 一以怨國, 一以懷嫌於是女, 而爲此也. 其族如金世豪, 姜文弼等非一人, 豆大之族曹姓及姜善與其子并其族姜姓, 無遺拿來. 世豪等加烙刑, 介今等亦刑訊.”

지라도, 원하지 않는 대상과 결합되기를 거부하는 명백한 의사를 그녀들이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표명했고 공감했음 역시 드러낸다. 그리고 의녀들의 발언(을 빌은 현실 고발)을 그녀들의 ‘淫夫’²³⁾가 일으킨 스캔들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여성의 사회적 발언과 행동을 여성에 대한 性的 스캔들을 만들거나 그와 같은 공격으로 되갚으면서 핵심 논지를 흐트러곤 하는, 남성 중심적 매카니즘의 추한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투서 사건은 내명부의 언론 담당자로서 세조~성종대에 상당한 권력을 가졌던 궁인 曹豆大를 소환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조두대는 『실록』에서 ‘曹典言’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내명부 종7품의 典言을 지낸 궁인이다. 내명부에는 정5품 상궁부터 종9품 奏變宮까지, 내명부의 일을 맡은 女官이 있는데, 그중 전언은 중궁의 宣傳·啓稟에 관한 일을 맡았다. 한문과 한글을 알고, 중궁의 언어를 전달하는 耳目의 자리였다. 근래의 인터넷 기사에서 조두대를 ‘조선의 최순실’이라든가 ‘명탐정’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²⁴⁾

전언을 맡았던 조두대의 활약은 성종 즉위 초반의 정희왕후 섭정 기간에 두드러졌다. 원래는 광평대군의 가비였는데, 세조조 때부터 내사의 출납을 맡았다. 그러다가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품계나 신분으로 볼 때에는 미천한 위치였음에도, 女官 조두대의 역할이 커졌다.²⁵⁾ “정희왕후에게 아뢰지 않고 일을 판단했다”, “대신에게 1백석이나 되는 곡식을

23) 연산군이 지목한 의녀들의 ‘淫夫’를 한글에서 漢字로 입력하려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음부’로 등재된 한자는 ‘淫婦/陰府/陰符/陰部/陰阜/音符’이다. 淫婦의 대항인 淫夫는 기본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가 보다. 백과사전의 풀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蕩子라는 말은 ‘음부’와 함께 쓰이고 있었다.

24) 기사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조두대를 다룬 TV매체도 그렇고 현대 정치계에서의 배후세력, 국정농단, 막가파식 무소불위의 권력의 소유자처럼 그려진 듯한 인상을 받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거 여성들에 대한 여러 매체의 조명과 관심은, 여성들을 경험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에서 여성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성립되는 역사적 과정의 하나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선 당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5)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3일 무자(2).

내려주었다”는 지적²⁶⁾이 나오는 데서 짐작되듯, 수렴청정 시기에 내전과 외전 사이를 오가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이 조두대를 ‘권력 소유자’로 만들었다. 조두대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은 성종의 親政이 시작되려던 시기인 1475년(성종 6) 즈음 보인다. 정희왕후의 전교를 중간에서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키운 조두대에, 섭정이 마무리 되는 즈음부터는 일정한 제압이 가해진다는 느낌을 준다. 조두대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482년 천인에서 영구히 양인으로 바꾼다는 전교가 내려졌다는 기사에 붙은 사관의 논평이고, 하나는 1504년 갑자사화 때 그녀에게 더해진 죄명문이다.

[1] 교지를 내리기를, “私婢 豆大는 세조 조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內庭에서 시중(給事)하여, 부지런하고 삼가서 공이 있으니, 영구히 良人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다.

史臣이 논평하기를, “두대는 姓이 曹哥이고, 광평대군의 家婢인데, 성품이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文字를 解得하였고, 累朝 內庭에서 시중하여, 宮中の 故事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貞熹王后가 수렴청정할 때에는 機務를 出納하여 氣勢가 대단하였으므로, 그 아우(姪)가 臺官과 더불어 길(道)을 다투는 데까지 이르러서 큰 獄事를 이루었으니, 그가 朝廷을 유린(陵轢)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문을 열어 놓고 뇌물을 받아 들이니, 부끄러움이 없는 무리들이 뒤질새라 분주하게 다녔다. 왕왕 그것을 인연하여 갑자기 高官에 이르기도 하였는데, 李鐵堅과 閔永肩·邊處寧과 같은 이가 더욱 심한 자이었다.” 하였다. -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8월 11일 정축(6)²⁷⁾

[2] 金勸·任士洪·姜渾 등이 罪名文을 지어 바쳤다. “(전략) 豆大는 궁역에 오래 있어 여러 조정을 섬기매 은총에 의지하여 그 陰邪를 마음껏 하여 坤極

26) 『성종실록』 62권, 성종 6년 12월 13일 무자(5).

27) “○教旨: “私婢豆大, 自世祖朝迄今, 給事內庭, 勤謹有功, 可永許爲良.” 【史臣曰: “豆大姓曹, 廣平大君家婢也, 性聰慧, 曉解文字, 累朝給事內庭, 多識宮中故事, 貞熹王后垂簾之際, 出納機務, 勢焰熏灼, 其妹與臺官至爭道, 構成大獄, 其陵轢朝廷如此, 開門納賄, 無恥之徒, 奔走恐後, 往往因緣, 驟致高官, 如李鐵堅, 閔永肩, 邊處寧, 其尤者也.”】

을 위태롭게 하고자 피하여 엄·정에게 붙어서 참소와 모함이 날로 심하여 큰 변을 가져왔으니, 그 죄악을 헤아리면 위로 宗社에 관계됨이라, 이에 명하여 부관하여 능지하고, 그 養子와 동기를 결장하고 그 재산을 적몰하고 그 집을 저택하고 돌을 세워 죄악을 적게 하여 후세의 불귀를 피하여 무리지어 악행하는 자를 경계하노라.”- 『연산군일기』 연산 10년 6월 28일 정해(4)²⁸⁾

[1]의 논평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대군 집안의 私婢에서 良人으로, 여중에서 궁궐 내정의 政事를 맡으며, 관료들의 任免에까지 관여하는 지위에 이르렀던 한 여성의 삶의 과정을 알 수 있다. ‘죄명문’이라고 하는 형식의 글 안에서 그녀가 가졌던 총명한 성품과 슬기로우며, 漢文을 이해하는 능력과, 오랜 궁궐 생활에서 얻은 노련한 지혜와 경험들도 환기할 수 있다. 이런 재능과 지식, 정치 권력에 대한 집중이 조두대를 고관들 사이에서 위세를 잃지 않는 여성이 되게 했을 것이다. [2]는 그녀가 연산군의 모후, 윤씨의 폐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발언(증언)이다. 정희왕후의 섭정을 비롯하여 대비전의 內政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결국 그녀에게 권력을 주었던 대비전의 지지가 연산군의 대에 이르러 무덤에까지 화가 미치는, 재앙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²⁹⁾ 이 텍스트 역시 그녀에게 죄를 부과했던 연산군과 관료들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 행동의 패턴과 결과 등 다양한 여성 지식의 측면에서 읽을 수 있다.

이후에 조전언의 조카인 조복중과 관련된 논란이 벌어졌는데, 신하들은 성종에게 “일개 나인 때문에 나라의 법을 바꾸려 한다”는 식의 비판을 했지만, 성종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³⁰⁾ 이 일은 극단적인 대립을 낳

28) “○金勸, 任士洪, 姜渾等製進罪名文, 其辭曰: (前略)豆大久在宮掖, 服事累朝, 藉恩席寵, 逞其陰邪. 謀傾坤極, 黨附嚴, 鄭, 讒構日滋, 以致大變, 揆其罪惡, 上關宗社. 茲命剖棺凌遲, 杖其養子與其同產, 籍其財, 澌其室, 立石紀惡, 以戒後世之謀不軌, 而黨惡者.”

29) 인조 대의 궁인 愛蘭 또한 궁중의 고사에 밝고 궁중에 익숙하여 중전과 세자궁의 신임을 받았다. 나중에 소현세자의 빈인 강빈의 신임을 받으면서, 조숙원과 사이가 나빠졌고, 나중에 결국 절도로 귀양보내졌다. 『인조실록』 인조 23년 7월 22일 신미(3).

는 형국으로 갔다. 조전언의 조카를 징벌하라는 요구는, 이에 불응하는 성종에 대응하여 ‘군주의 권위도 법치의 논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신하들의 강력한 저항을 낳았다. 말하자면, 조전언과 그 일족의 권력은 신하들로 하여금 왕정 국가에서의 군주의 지위와 법의 위상에 관한 인식의 전환, 정확히는 왕의 권력에 우선하는 법치 정신의 強化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³¹⁾

사헌부 대사헌 김승경 등이 상소하기를,

“(전략)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나인의 일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논할 것이 못된다.’고 하셨는데, 신 등은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가령 女謁이 盛行하여 나라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데, 大臣이 말하지 않고 臺諫도 말하지 않고, 서로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하교하시기를, ‘죄가 있으면 어찌 나인이라고 하여 용서해 주겠으며, 죄가 없으면 어찌 外人이라고 하여 반드시 다스리겠는가?’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조복중과 조전언이 서로 의지하는 형세로 보아, 전하께서 비록 조전언의 문제로 인하여 조복중의 죄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의논은 반드시 여알이라고 지적할 것이고, 후세의 의논도 반드시 여알이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하께서 엄하게 법으로 다스린다면 여러 사람의 마음이 승복하고 姦人들이 자취를 감출 것인데, 어찌 중간에서 버려두어 묻지 아니하고서 사람들에게 私心을 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무릇 법이란 것은 天下의 公器이므로, 비록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私로써 公을 굽히며 특정인 때문에 법을 어지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聖上의 明察하심을 다시 드리우셔서 속히 끝까지 추국하라고 명하시어 그 죄를 밝혀 바로잡게 하소서.”하였는데(후략) - 『성종실록』 265권, 23년 5월 14일 계미(4)³²⁾

30) 『성종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1일 경진(4). “지금 만약 버려두고 논하지 않는다면 외간에서는 반드시 전하께서 나인을 위해 법을 굽히셨다고 할 것입니다. 청컨대 끝까지 추국하여 죄를 적용시키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동년 5월 12일 신사(3). “외부의 소문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신 등도 전하께서 조전언 때문에 그 조카에게까지 은혜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31) 물론 이것은 여러 계기들 중의 하나였지 조전언의 사례가 유일하고 전폭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2) “○司憲府大司憲金升卿等上疏曰: (前略) 殿下敎曰: “內人之事, 非在下之所

사헌부에서 올린 이 상서의 핵심은 “법대로 집행하라”는 것이었다. 성종은 궁궐의 내전의 나인의 일이라 말하기 어렵다든가, 죄악의 情狀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든가, 추운 겨울에 刑訊을 하기가 용이치 않다든가 하는 이유를 내놓으며 이리저리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법이란 천하의 公物이므로 군주도 이를 함부로 굽힐 수 없다는 法治의 논리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법치 정신’은 『경국대전』이라는 國典의 完整의 과정과 함께 이 시기를 이끌던 시대 정신이었다. 이를 정치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성종 치세 후반의 큰 과업이었다. 조전언이라는 특별한 재능과 위상과 역사를 가진 여성에 대한 평가와 인정, 징벌의 논리 또한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의 발현과 맞물려 있었다.³³⁾

3) 나이 들수록 아름답고 음란해지다: 고려에서 조선을 산 김씨

조선 전기라는 역사적 국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고려의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어떻게 갱신하거나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중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사족 여성의 再嫁와 三嫁, 남성의 重婚, 二妻三妻의 문제였다. 여성의 경우, 고려 시대 이래 여성의 풍속을 ‘유교적 명분’ 하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국가 건설자·운영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어떤 여성들은 ‘淫婦’로 불렸는데, 조선 초기의 ‘이름난 淫婦’로

敢論也.” 臣等尤竊惑焉. 假如女謁盛行, 國事日非, 則大臣而不言, 臺諫而不言, 相與坐視而不救乎? 殿下又教之曰: “有罪則豈以內人而饒之, 無罪則豈以外人而必治?” 以今日福重, 典言相依之勢觀之, 殿下雖不由典言之故而棄福重之罪, 外間之議, 必指爲女謁也, 後世之議, 亦必指爲女謁也. 若殿下痛繩以法, 則衆心厭服, 姦人斂迹矣, 豈可中棄不問, 示人以私乎? 夫法者天下之公器, 雖人君不得以私撓公, 以人亂法也. 伏望更垂聖察, 亟命畢推, 明正其罪.”

33)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4일 을유(1). 1493년(성종 24) 10월에는 조두대의 여동생 조말덕이 벽제하며 길을 가던 대간의 종을 구타하고 욕보인 일이 생기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대간에서는 이를 모두가 공경하며 예를 표하는 언관을 노예가 능욕한 일로 보았다. 그런데 이를 성종이 ‘서로 싸운 일’로 보아 법을 적용하려 하자 그것은 “전하의 잘못”이라고 직언했다.

거론되는 여성이라면 고려 문하시랑 김주의 딸 김씨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그녀에 관한 기록 역시 적지만, 고려의 유제가 강하게 남아 있던 조선 전기의 여성이(이전처럼) 결혼과 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어떤 윤리적 낙인을 얻게 되는지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김씨 자신의 경험과 언어, 그리고 그에 대응한 남성들의 언어와 감정 모두가 의미 있다.

김씨는 처음에 공신의 자손인 趙禾와 혼인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李枝와 혼인했다. 아래 인용하는 글은 김씨가 이지와 혼인할 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의 후반부는 흡사 조선 전기의 필기의 한 대목을 보는 듯하다.

사헌부에서 영돈녕부 李枝를 탄핵하였으니, 故 중추원 부사 趙禾의 아내 김씨에게 장가든 때문이었다. 김씨는 문하 시랑 찬성사 金湊의 딸인데, 아름답고 음란하여 늙을수록 더욱 심하였고, 형제와 어머니가 모두 추한 소문이 있었다. 기묘년에 憲司에서 刑에 처치하고자 하였는데, 세력을 인연하여 벗어나고 외방에 귀양갔었다. 이 때에 이르러 헌사에서 또 탄핵하니, 임금이 듣고 헌부에 전지하기를, “아내 없는 남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스스로 서로 혼인하는 것을 어찌 반드시 문젯는가? 하물며 李枝가 繼室을 쫓은 것을 내가 실로 아니 다시는 핵문하지 말라.” 하였다.

처음에 김씨가 이지에게 시집가기를 피하면서 아들 趙明初 등에게 알지 못하게 하였다. 어두운 저녁에 이지가 이르니, 조명초가 그제사 알고 이지의 목덜미를 잡고 함께 땅에 쓰러져서 목놓아 슬피 울며 말리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김씨가 이미 同牢하고 나서 이튿날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분이 늙었는가 하였더니, 참으로 늙지 않은 것을 알았다.” 하였는데, 김씨의 그 때 나이 57세였다. -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일 갑오(2)³⁴⁾

34) “○司憲府劾領敦寧府事李枝, 以娶故中樞院副使趙禾妻金氏也. 金氏, 門下侍郎贊成事湊之女也. 美而淫, 老益甚, 兄弟及母, 俱有醜聲. 歲己卯, 憲司欲置於刑, 夤緣得脫, 被流于外, 至是憲司又劾之. 上聞之, 傳旨憲府曰: “無妻之男, 無夫之女, 自相婚嫁, 何必問也? 況枝娶繼室, 予實知之, 更勿劾論.” 初, 金氏謀嫁枝, 不令子明初等知. 昏夕枝至, 明初乃知之, 扼枝吭, 與俱仆地, 號哭而止之不得. 金氏既同牢, 翼日謂人曰: “吾意此公老, 乃知真不老也.” 金氏時年五十七矣.”

이 이야기는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에 사족 여성인 과부 신씨가 공신인 70세의 재상과 재혼하여 재상의 아내로서의 명예를 누리 보려고 했지만, 혼인 직전 그가 임질에 걸렸으며 천식까지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 노쇠한 모습이 싫어 혼인을 그만두려 했고 이로 인해 송사가 벌어진 일화를 연상시킨다. 주인공도 다르고 이야기의 성격도 다르지만, 재혼을 한다는 것이 남녀의 욕망과 관련된 것임을 뚜렷하게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결국 正史인 실록과 野史의 성격을 가진 이 골계전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강명관(2007;2016)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 사나운 여자(悍婦)들에 대한 기록이 폭증하는 것은 축첩을 제도화하는 등 남성 사족의 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여성들에게는 외출 금지, 절에 가기 금지, 三嫁는 물론이고 再嫁를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을 통제된 시대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에 대한 저항, 저항의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면, 이것을 ‘질투’라거나 ‘드세다’라거나 ‘음란하다’는 말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런 여성의 행동과 언어는 일상의 행동 윤리를 教養하는 場에서는 不德한 것으로 규정되었고, 필기 잡록류와 같은 또다른 場에서는 골계와 색담의 형태로 인정물태를 드러내는 요소로 활용되었다. 정사와 야사의 기록들이 담지하고 있는, 여성의 경험, 감정, 언어,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규제들 또한 모두 고전 여성 지식의 자원으로 서 추출되어야 할 것들이다.

다시 위 기사로 돌아가 보면, 김씨의 아들, 곧 조화의 아들이 슬피 울며 말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³⁵⁾ 압권은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다. 슬퍼하며 재혼을 말리는 아들을 두고 몰래 혼인한 김씨의 이유. 그것은 욕망의 문제였다. 김씨와 관련한 기록은 따로 살펴할 할 만큼 제법 된다. 어찌 되었든 여성의 경우, 남성들과 달리 중혼은 거의 없었다. 이혼하거나 과부

35) 김씨가 공신의 아내로서 수신전을 받았고, 재혼한다 해도 이 수신전에 대한 재산권이 김씨에게 그대로 있었던 상황도 중요했다. 김씨가 재산이 많았음은 『실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된 뒤에 경제적인 이유, 집안의 강제적인 권고, 또는 위에서 본 김씨의 경우처럼 본인 자신의 욕망과 선택에 의해 재가, 삼가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 ‘失節과 ‘失行’이라는 윤리적 낙인이 가해졌다. 이렇게 사회적 불명예를 더한 이유는 실은 매우 물질적인 데서 출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에게는 守信田과 같은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고, 그 자손들이 관리에 나가는 것을 배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관리의 수효를 조절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 시대였으니 오래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고려 시대 이래의 혼인 풍속과 남녀의 가치관을 보자면 조선 전기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낙인은 지나치고, 비현실적이었으며, 낯선 경험이었다.

이런 점에서 한 지방 혼도의 상소는 오히려 고려 이래의 혼인 풍속을 현실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당시의 人情을 증언한다.

단성 혼도 宋獻소이, 災變으로 인한 상소 17조를 올렸는데, 그 제1조에 아뢰기를,

“孀婦의 개가에 대한 금지는, 절의를 존중하고 예의를 숭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과 남녀는 사람의 곧 욕구이므로, 남자는 생겨나면 장가가기를 원하고 여자는 생겨나면 시집가기를 원하니, 이것은 生이 있는 처음부터 인정의 고유한 바이오니, 능히 금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부인이란 三從의 義가 있으니, 본집에 있을 적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것은 곧 《禮經》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혹은 시집 간 지, 4일 만에 홀어미가 된 자가 있고 1년 만에 홀어미가 된 자가 있으며 혹은 나이 20, 30에 홀어미가 된 자가 있는데, 이들이 끝내 능히 貞節을 지켜서 共姜·曹氏처럼 나간다면 다 말할 나위 없거니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또 자식도 없어, 혹은 行露의 젖은 바가 혹은 담장을 넘어 든 자에게 헐박을 받는 바가 되어 마침내 본래의 절행을 잃고 말게 됩니다. 청컨대 부녀의 나이 20세 이하로 자녀가 없이 홀어미가 된 자는 모두 改嫁를 허하여 살아가는 재미를 부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 『연산군일기』 28권, 연산 3년 12월 12일 기묘(1)³⁶⁾

『고려사』와 『실록』을 통해 보면 이른바 ‘淫婦’를 관리하는 ‘恣女案(京市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종의 ‘文案’이 시도되거나 작성되었다. 그 반대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 여성들의 열행과 효행을 담은 기록들(『삼강행실도』를 비롯한 관찬의 윤리서)이 있었다. 중세의 여성 DB라 하겠다. ‘자녀안’은 再嫁나 三嫁를 한 사족 여성들의 명단이다. 이들의 행실을 ‘失行’ 또는 ‘失節’이라는 도덕적 가치로 심판하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그녀들과, 그녀들의 자손에게 경제적 이익·사회적 위상을 박탈하고자 했다. 역사학의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듯이 이 문제는 수절하는 관료의 아내에게 守信田을 지급해 오던 고려 이래의 토지 제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수신전의 재산권을 소유한 과부가 재가, 삼가를 하면서 얻는 누적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박탈하고 재산권의 소유처와 재산 상속 등의 문제에서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남편을 잃은 여성이 살아갈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성의 결혼을 ‘실절’ ‘실행’이라는 도덕 논리로 통제했던 것이다. 『실록』의 기록들에서 여성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토지, 경제, 윤리 문제 등 사회의 효율성과 통합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자녀안’이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와도 같이, 특정 여성에 관한 지식과 데이터가 일방에 의해 ‘생성’ ‘재구’되었던 것이다.

36) “○己卯/先是, 丹城訓導宋獻全因災變上疏十七條, 其一條曰: 孀婦改嫁之禁, 欲崇節義, 而尙廉恥也. 然飲食男女, 人之大欲, 故男子生而願爲之有室, 女子生而願爲之有家. 此有生之初, 人情之所固有, 而不能止之者也. 且婦人有三從之義,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卽《禮經》之教也, 然或有三日而爲孀者, 期月而爲孀者, 或年至二十, 三十而爲孀者, 終能守貞節, 如共姜, 曹氏則已矣, 無父母兄弟, 又無其子, 或爲行露之所沾, 或爲踰牆之所脅, 終失素節, 往往而是. 請婦女年三十以下, 無子女爲孀者, 皆許改嫁, 以遂生生之計.”

4. 맺는말: 고전 여성 지식 자원에서의 개별성, 그리고 중첩성

양반-남성은 자타의 언어로 기록된 문서들(문집 등)과, 과거 급제 등의 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족보 등을 통해 생애 전체를 추적할 수 있는 지식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반-남성은 사실 조선 전기 사람들의 경험과 언어라는 전체에서 보면 절반 혹은 그 이하의 일부를 차지한다. 위의 『실록』에서 본 것처럼 파편화된 형태로, 개별적 입자처럼 기록된, 다수의 경험과 언어가 또다른 한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인용이 빈번한 듯하지만, 조선 시대 지식인들에게 가치관과 출처의 깊은 고민을 일으켰던 세조의 왕위 찬탈에 저항한 사람들의 일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그때, 단종 복위를 모의했던 지식인들은 ‘亂臣’의 이름으로 죽음과 유배를 겪거나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이들의 이름은 ‘死六臣’ ‘生六臣’으로 상징화되었고, 절의와 드높은 기개로 기려졌다. 그리고 이들과 직간접인 관련성을 師承, 師友, 私淑 등과 같은 언어로 입증하여 ‘일치된 가치를 지향한 집단’의 일원임을 드러냄으로써 드높은 도덕 정신을 인증받으려는 후대 지성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자명한 일임에도 간과된 것, 이 역사적 사건에는 무수한 여성들의 삶 또한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충신과’ ‘지사의 아내와 딸, 家婢가 그들이다.

단종 복위 모의 사건을 마무리한 세조는 포상을 통한 사회 통합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세조가 자신이 사랑했던 공신들에게 이 ‘저항자’의 아내와 딸, 家婢를 상으로 주었던 것이다.³⁷⁾ 이 일이 『세조실록』 2년 9월 7일 와 3년 8월 21일자 기사로 남아 있다³⁸⁾ 그런데, 『실록』의 사관은 이 여성

37) 이개의 아내 加知가 강맹경에게, 박팽년의 아내 옥금이 정인지에게, 성삼문의 아내(계배) 김차산과 딸 효옥이 박종우에게, 유응부의 아내 약비가 권반에게, 첩의 딸 환생이 봉석주에게, 하위지의 아내 귀금과 딸 목금이 권언에게, 유성원의 아내 미치와 딸 백대가 한명회에게 상으로 주어졌다. 『세조실록』 2년 9월 7일(갑술)(2).

38) 세조 2년(1456)에는 64명의 ‘공신’ 집안으로 약 170여 명의 여성들이, 세조 3년

들의 이름을 모두 실어 놓았다. 그리고 그녀들의 이후의 자취를 추적할 단서까지도 『실록』에서 확인된다. 상을 받은 자에게 ‘하사된’ 여성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⁹⁾ 이 여성들은 모녀가 함께, 또는 처첩이 함께 벌을 받고 자기들의 의사와 무관한 곳으로 보내져, 살아야 했다. 그 명단을 보니, 어린 단종을 옹위하면서 정권을 농단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鄭萊의 아내는 이름이 鄭順非였다.⁴⁰⁾ 남편 정분은 1453년 유배 도중 세상을 떠났고, 아내 정순비는, 계유정난 때부터 명성을 알리기 시작한 武臣 林自蕃에게 ‘하사되었다’. 成三問의 아내 김차산(계배)과 효옥은 태종의 부마 朴從愚에게 함께 보내졌고, 김승규의 아내 내은비와 딸 내은금, 그리고 첩의 딸 한금은 鄭麟趾에게 보내졌다. 그리고 1472년(성종 3) 5월, ‘亂臣의 가족들을 풀어주라’는 명이 내렸음이 역시 『실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여성들은, 앞선 세조대의 기록을 다시 되짚어 보니, 1456년과 1457년에 공신들에게 보내졌던 여성들 중 일부였다. 앞서 정인지에게 함께 보내졌던 김승규의 아내와 딸은 1472년 방면 대상자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정분의 아내 정순비 또한 방면 대상자로 이름이 올랐다. 15~6년동안 ‘난신’의 가족으로서 살았고, 이때에 이르러 그로부터 풀려났던 것이다.

이 여성들의 ‘명단’은, 그저 명단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육신과 생육신, 그들과 연관된 ‘절의의 명단’이 ‘집단적 추송’의 과정을 거쳐 명명백백히 전승되듯, 앞으로는 함께 기념되어야 할 하나의 영역이다. 물론 이 여성들의 이름은 두세 개의 기록에서 두세 번 언급되었을 뿐이다. 개인의 구체적인 활동 사항도 아직은 드러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고민은 필요하

(1457)에는 42명의 ‘공신’에게 약 55명의 여성들이 보내졌다.

39) 이전에 여성생활사 자료를 번역하면서, 여성들의 이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무수하게 느꼈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여성들의 이름이 명시된 이 기록은 놀라움을 주기도 했다.

40) 실록에는 성은 없이 이름만 나와 있지만, 과거 급제자인 경우는 『방목』 등의 기록을 통해 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姓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많다.

다. 단 한 번이지만, 조선의 역사상, 그리고 개인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 저항적인 사건에 관련된 '사람-개별적 존재로서 이 여성들의 기념비는 '더불어' 마련되어야 할 듯하다.

이처럼, 『실록』에서 낱낱이 대면할 수 있는 여성의 경험과 언어는 고전 지식 자원으로서 다시 읽혀져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남성-양반의 경험과 언어는, 그 對域에 여성·남성-하층의 경험과 언어를 짝으로 갖는다. 이 '대역'의 경험과 언어는, 남성-양반의 언어인 漢字로 주로 기록되었다. 일종의 필터링을 거침으로써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며 그에 따라 '오염'된 측면 또한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접적으로 문자화된 맥락 안에도 분명 잠복된 경험과 언어가 존재한다. 앞에서 살폈듯, 연산군의 폭정-土禍에서 선비들이 경험한 국면의 對域에는 여성-궁인들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자료들에서 주의 깊게 읽어내고 고전 지식의 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성 지식 자원들이 향후의 고전 지식의 구축에서 '인식'되고 구체적인 기술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여성이 등장하는 사건/장면의 일회성, 단발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왕실의 특정 여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여성 관련 사건은 10건 이내의 데이터를 갖는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위에서 다룬 것들처럼 역사적 변환의 파장과 맞물린 것들도 있고, 관련된 여성과 남성들 그(들) 자신만의 것인 경우도 있다.⁴¹⁾ 이를테면, 앞서 살핀 조두대는 조선 시대 하층-여성으로서 특별한 경험과 언어를 소유했다. 조선 전기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신분의 역전'도 있었다. 『실록』에 그와 같은 성격(캐릭터?)의 인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런 점에서 유형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보여주는 이 시기 여성의 경험치와 역량은 의미가 있다. 반드시 중첩되어야만 어떤 지식의 영역에 표제화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 또한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의 명칭을 고

41) 지면 제한 상 전부 다루지 못했지만, 매우 다양하면서 단발성인 사건과 경험들은 많았다.

전 지식 체계의 최소 영역/항목에서 펼쳐 놓는다는, 설계 기초에 관한 공감감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즉, 고전 지식 체계의 최소 영역은 개인과 사건, 즉 무수한 개별성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하층 여성으로서 그들이 겪었던 몇 겹의 배제를 생각한다면, 계급과 집단의 이름으로 다시 정형화시킨 고전 지식의 체계는 의미 없는 환원이고, 최첨단의 지식 DB라 해도 그것은 결국 조선 사회의 복기라는 중세적 상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관점의 고전 지식은 '낮고 폭넓은 수준의 개별적 최소 단위'를 제안하며, 무수한 개별자로부터 출발하여 중첩된 디렉토리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발성과 개별성을 곧바로 '사소함'으로 판단해, 하위 영역에 埋藏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고전 지식 체계의 구축에서도 반드시 고수되어야 할 방식은 아닐 것이다.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DB, 국사편찬위원회.

成 俔, 『慵齋叢話』, 2015, 김남이·전지원 외(역), 휴머니스트.

강명관. 2016a. “조선 사족체제의 성립과 여성의 통제.” 『여성학연구』, 제26권 제3호, 99-125쪽.

강명관. 2016b. “조선 전기 부처제(婦處制)와 ‘사나운 처’(悍婦).” 『여성과 역사』, 제25권 1-27쪽.

강문식. 2017. “『조선왕조실록』 연구의 현황.” 『朝鮮時代史學報』, 제74권, 215-245쪽.

김경진. 1977. “『朝鮮王朝實錄에 記載된 孝女·節婦에 관한 小考.” 『아시아여성연구』, 제16권, 47-72쪽.

김기림. 2017. “조선후기 여성생활사 자료의 수집 및 재구축 방안모색: 한문자료를 중심으로.” 『고전여성문학연구』, 제35권, 77-110쪽.

김남이. 2014. “조선 전기 지성사의 관점에서 본 사회(史禍) - 조선 전기 한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수립을 위한 탐색.” 『민족문화사연구』, 제56권, 195-235쪽.

김준형. 2016. “실재한 사건, 다른 기록 - 『태평한화골계전』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제54권, 345-393쪽.

백승아. 2014. “15, 16세기 部民告訴禁止法의 추이와 지방통치”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사학과 국사연구실. 1985. 『이조여성관계사료 조선왕조실록』(1)-(17)』 서울: 이화여대 사학회.

최기숙. 2017. “여성문학(사)의 ‘역사/문화’ 공간 생성과 ‘디지털’ 창의 생산을 위하여 - 상상지리지의 설계와 문화생산”. 한국여성문학학회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최명조. 2012. “조선 전기奴婢와主人 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 성종8년(1477)主人謀害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1호, 215-265쪽.

Abstract

A Case Study of Women's Experiences and
Emotions in Early Joseon Dynasty:
– A Discussion of Possibility to Create Classical Women's
Knowledge System Using 『Joseonwangjo Shillok』 –

Kim, Nam Yi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the needs to create classical women's knowledge DB for 『Joseonwangjo Shillok (and its DB)』 and presented a rough outcome for the possibility of new imagination to build a classical knowledge DB. The Korean classical knowledge DB that we generally use today is a ‘medieval’ archive system or its retrospective imagination. The basic system that builds the classical knowledge built on the medieval social class and men-centered ideologies is clearly reflected in the knowledge DB. In cas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Confucian ideologies and social structures were empirically premised without clear understanding and perspective of the time and had the tendency to comprehend and evaluate the time based on the structure and frame. This was also true for the perspectives toward and studies concerning the women of early Joseon Dynasty. Saimdang, Hwangjini, and Heo nanseolheon stood out in their times and continuously reproduced as biased and inaccurate images such as ‘the great mothers’ or the ‘victims of paternal society’. This study examined the traditional women's experiences and language based on the 『Shillok』 of early Joseon Dynasty to build a knowledge system for the classical women of early Joseon Dynasty to discuss the possibility and systemization of a knowledge DB for women. It also examined the point of imagination

and practice through which the feminist perspective can contribute to the system of classical knowledge DB being built through this process.

In 『Shillok』, women's names and their events and scenes are one-time episodes without continuation. Except for certain royal women, most records are less than 10 pieces of data and the events were about the related women or men, although some were related to the historical transition. Even when a certain case is considered important, it does not mean that all related people are important. So what is the possibility we can discover in 『Shillok』? Also, how much 'individualism' should be considered? It should be asked whether it is valid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How should the famous names of classical women be positioned in the system of knowledge of classical women?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knowledge design to set each name in the initial/minimum stage of overlapped directories. In other words, it is most necessary to consider the countless individuality of individuals and events that compose the minimum areas of classical knowledge DB. Considering the layers of limitations women must have experienced as the low class in the medieval feudal society, the classical knowledge DB that confines 'them' in the name of class or group is meaningless. Feminist perspective requires a new imagination that begins from the countless layers of directories based on the 'minimum individual units that are low and broad.'

Key words: Joseonwangjo Shillok, early Joseon period, korean knowledge database, digital, women's history

- ┃ 투 고 일 : 2018년 3월 10일
- ┃ 최초심사일 : 2018년 3월 31일
- ┃ 게재확정일 : 2018년 4월 17일

